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9-30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5노2127 상표법위반, 저작권법위반
피 고 인	A
항 소 인	검사
검 사	이정호(기소), 유연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황규목
원 심 판 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12. 10. 선고 2025고정863 판결
판 결 선 고	2026. 8. 14.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상표권인 'E'가 금지어에 포함된 시기를 확인할 수 없는 점, J 프로그램은 당시 개발 초기 단계로 오류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던 점, 소비자가 보는 판매화면에서 'E'가 쉽게 확인되는 점 등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상표법위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9-30

및 저작권법위반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1. 11.부터 2023. 10. 31.까지 서울 성북구 B아파트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 소매 및 해외직구대행업을 통신판매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골프장·휴양콘도 운영업, 의류, 잡화 등 전자상거래로 서비스 제조, 도·소매업 등을 운영하는 ㈜E 대표로서 이 건의 'F' 의류와 'G' 의류 상품(상표권 등록번호: H)과 이 상품의 사진 및 이미지 원저작물의 사용화면은 피해자가 E(인터넷주소 1 생략) 웹사이트와 오프라인 백화점 매장 및 E 플래그십 스토어를 통해 판매하던 의류와 저작권의 원저작물이다.

가.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3. 15.경 불상지에서 해외직구 통신판매 대행업을 하면서 인터넷 네이버 쇼핑몰 'I'에 'D'를 통해 대량등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여성조끼' 키워드 검색으로 피해자의 등록상품과 동일한 'F, G' 상품(이하 '이 사건 상품'이라고 한다)을 93,000원에 판매한다고 등재하여 피해자의 등록상표를 침해하였다.

나.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9-30

해자의 저작물인 위 '가.'항의 상품 원저작물의 사진과 이미지를 무단 복제하여 게시함으로써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상표법위반과 저작권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을 상표법위반죄와 저작권법위반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필요한데,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상품이 피해자의 등록상표를 사용한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이를 용인하려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② 피고인은 2023. 7.경부터 J라는 명칭의 대량등록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구매대행업을 영위하였다. J 프로그램의 핵심 매커니즘은 키워드를 입력하면 해외 오픈마켓 등 다른 사이트에서 판매 중인 해당 키워드의 상품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본인의 오픈마켓에 판매글로 게시하는 것이다. 피고인은 J 프로그램에 '여성조끼'라는 키워드를 입력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상품이 다른 상품들과 함께 피고인의 오픈마켓에 판매글로 게시되었다.

③ J 프로그램은 해외 오픈마켓에서 판매 중인 가품까지 그대로 가져와 상표권이나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표권 또는 저작권 등의 지적재산권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지어가 있는 상품을 자동으로 표시하여 주는 금지어 설정기능이 탑재되어 있었고, 금지어에는 피해자의 상표권인 'E'도 들어가 있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9-30

상품을 포함한 대량의 상품을 오픈마켓에 판매글로 게시할 당시에도 금지어 설정기능이 작동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이를 신뢰하고 이 사건 상품에 대한 판매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인다.

④ 물론 J 프로그램의 금지어 설정기능이 만능이라고 볼 수 없고, 오작동의 가능성도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만연히 믿고서 아무런 별도의 확인 절차도 없이 금지어 설정기능으로 표시된 상품을 제외한 나머지 상품에 대한 판매글을 무분별하게 게시하였다면,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성립할 여지는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모든 상품에 대한 판매글을 하나하나 직접 검토한 이후에 게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이 아무런 추가 확인조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상품이 피해자의 등록상표를 사용한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 부주의로 인하여 이 사건 상품에 대한 판매글을 게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⑤ 이 사건 상품이 판매되었다면 피고인이 구매대행 과정에서 이 사건 상품에 대한 판매글을 확인하면서 이 사건 상품이 피해자의 등록상표를 사용한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을 것이지만, 이 사건 상품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판매글을 삭제하기까지 단 한 건도 판매되지 않았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과 함께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구매대행에 관한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면서 강사가 개발한 J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구매대행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교육과정에서 J 프로그램의 금지어 설정기능에 대한 안내를 받은 점, ② J 프로그램의 운영자는 2023. 5.경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9-30

수강생들에게 '금지어 목록'을 제공하였고(2025. 12. 4.자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된 'J 대량등록 프로그램 관련 단톡방 대화내역' 참조), 위 목록에는 피해자의 상표권인 'E'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피고인도 위 '금지어 목록'을 J 프로그램의 금지어 설정기능에 등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의 상표권인 'E'가 주지·저명한 상표에 해당하거나 최소한 업계에서 인지도가 높은 상표라는 점에 관한 자료는 없는 점(피고인이 판매글을 삭제하기까지 이 사건 상품이 단 한 건도 판매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인지도가 높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④ 상표권침해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사용된 물건을 판매했더라도, 그 물건이 모조품이고, 피고인이 모조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한 사실이 증명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의 오픈마켓에서 판매하는 이 사건 상품이 모조품이라는 사실, 피고인이 이를 알면서도 판매하려고 한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⑤ 상표권침해로 인한 민사상의 책임과 관련하여서는 상표법 제112조에 따라 고의가 추정되나, 형사상의 상표권침해죄의 고의를 판단함에 있어서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피고인이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서 'E'라는 단어를 검색하였다면 'E'라는 상표가 타인의 등록상표임을 알 수도 있어 피고인에게 그와 관련한 과실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상표권침해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며,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9-30

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허명산 _____

판사 박지은 _____

판사 김성은 _____